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정	2021. 03. 17.
개정	2022. 09. 01.
개정	2022. 12. 28.
개정	2023. 03. 27.
개정	2023. 12. 28.
전부개정	2024. 12.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따른 전문가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심사평가위원 후보로 승인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가풀”이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 후보단을 말한다.
3. “심사평가위원회”란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4. “심사평가위원”이란 진흥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5. “전문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란 전문가풀 운영과 전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전문가풀 관리, 검증위원회 개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전문가풀 운영 및 심사평가위원 관리에 관하여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전문가풀 관리

제4조(전문가 자격요건)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전문가 모집) ① 진흥원은 필요시 전문가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모집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전문 분야의 경력 및 학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신청인의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흡하여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제10조에 따라 영구배제되거나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신청인이 검증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제6조(안건 상정) ① 소관부서는 신청인의 전문가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해 제5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증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소관부서는 우수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진흥원 유관 단체의 전문가 추천 서류를 검증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7조(검증 및 승인) ①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1. 제4조의 전문가 자격요건
2. 전문 분야 관련 경력 등 전문성
3. 기타 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적합성

② 검증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전문가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제8조(전문가풀 등록) 진흥원은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등록사항 변경) ① 진흥원은 전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의 주요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2. 전문가풀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전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문가풀에 반영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한다. 다만, 진흥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가의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등록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 변경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전문가풀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제한) ①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가풀 영구배제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문가 신청 서류, 증빙 서류 등 진흥원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인 경우
2.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3. 진흥원의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검증위원회는 전문가가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풀 영구배제 또는 심사평가위원회 참여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1. 심사평가위원회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3.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전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업체의 임직원에게 심사평가위원임을 공개하여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4.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업체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하여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업체에 자문하는 등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5. 공개되지 않은 심사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누설하는 경우
 6. 심사평가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업체정보, 사업계획서 등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심사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에 따라 전문가풀에 관련 사항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임의 제한) 진흥원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제보 및 민원 등을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 의결 전까지 해당 전문가의 심사평가위원회 참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전문가 검증위원회

- 제12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진흥원의 경영 담당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검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검증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검증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검증위원회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분담을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분과별 검증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⑥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검증위원회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척·회피) ①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신청인 또는 심의 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심의 대상자가 6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② 검증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검증위원회의 기능)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문가 검증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문가풀 영구배제 및 심사평가위원회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문가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준수사항) ① 진흥원은 검증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검증위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공정한 심의 및 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한다.
2. 검증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3. 검증위원은 친인척관계, 이해관계 등 제척·회피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4. 검증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심의 및 의결 정보, 개인정보, 회사 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검증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범죄 등으로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검증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검증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지급) 진흥원은 검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1.3.17.)

제1호(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1.)

제1호(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제1호(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7.)

제1호(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내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지침(소관부서)란 중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으로 개정한다.

②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영구배제되거나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임의 제한된 자”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의2를”을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4장을”로 개정한다.

<별표>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구배제 및 참여제한 기준

연번	구분	제한 기간
1	심사평가위원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구배제
2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영구배제
3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전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업체의 임직원에게 심사평가위원임을 공개하여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5년 이내
4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업체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하여 피평가자 또는 피평가업체에 자문하는 등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5년 이내
5	공개되지 않은 심사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누설하는 경우	3년 이내
6	심사평가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업체정보, 사업계획서 등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3년 이내
7	기타 심사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내